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0.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봉 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2025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예산안 총괄

금번 추가경정 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 반영과 기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제출된 안건임.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73억 1,325만 3천 원에 비하여 1,167억 5,953만 7천 원이 증가된 2조 9,140억 7,279만 원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7억 9,393만 1천 원이 증가된 2조 5,150억 2,493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6,560만 6천 원이 증가된 3,990억 4,785만 9천 원임.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
			기정액	구성비 (%)		
총 계	2,914,072,790	100.00%	2,797,313,253	100.00%	116,759,537	4.17%
일반회계	2,515,024,931	86.31%	2,400,231,000	85.80%	114,793,931	4.78%
특별회계	399,047,859	13.69%	397,082,253	14.20%	1,965,606	0.50%
공기업특별회계	260,675,268	8.95%	260,968,382	9.33%	△293,114	△0.11%
기타특별회계	138,372,591	4.75%	136,113,871	4.87%	2,258,720	1.66%

□ 세입재원

○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총 1,147억 9,393만 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359억 3,018만 4천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국도비보조금 799억 4,91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억 7,77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94억 6,30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377억 3,497만 2천 원에서 5.88% 증가한 1조 5,222억 4,760만 1천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0.53%에 해당합니다.

기정예산 절감분과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한 국·소별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복지 국 】

- 기정예산액 1조 1,693억 2,256만 7천 원 보다 7.18% 증가한 1조 2,532억 5,651만 7천원이며,
- 민생회복 소비쿠폰 638억 2,358만 5천 원, 생계급여 8억 5,020만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7억 6,832만 9천원, 부모급여 64억 7,441만 9천 원 등을 증액 편성

【 환경국 】

- 기정예산액 1,751억 9,338만 5천 원 보다 0.23% 감소한 1,747억 9,278만 8천원이며,
- 가운데양공원 환경개선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

【 남양주보건소 】

- 기정예산액 312억 434만 3천 원 보다 0.89% 증가한 314억 8,340만 7천 원이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9,642만 9천원 등을 증액 편성

【 남양주풍양보건소 】

- 기정예산액 132억 8,250만 9천 원 보다 0.12% 증가한 132억 9,876만 9천 원이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31만 8천 원 등을 증액 편성

【 동부보건소 】

- 기정예산액 69억 8,800만 2천 원 보다 2.39% 감소한 68억 2,110만 원이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9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 기정예산액 417억 4,416만 6천 원 보다 2.04% 증가한 425억 9,502만 원이며,
-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11억 5,0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7억 5,739만 2천 원에서 1.24% 증가한 878억 3,563만 5천 원으로 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63.48%에 해당합니다.

【 복지행정과 】 - 의료급여사업

- 기정예산액 80억 6,203만 8천 원보다 7.36% 증가한 86억 5,574만 4천원을 편성

【 환경정책과 】 - 수질개선

- 기정예산액 294억 6,921만 1천 원보다 1.64% 증가한 299억 5,374만 8천 원을 편성

□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위원회 변동사항 없음

□ 검토 의견

-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